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3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2. 12.
3. 회부연월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 강제수단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와 같이 출국금지, 감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9(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3천만원 이상(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0(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현 행	개 정 안
	<u>이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u> <u>3.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u> <u>4.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u> <u>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¹⁾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3천만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요건을 충족¹⁾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범위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① 3회 이상 체납, ② 1년 이상 경과, ③ 5천만원 이상, ④ 정당한 사유 부재, ⑤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서 준조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지방세와 달리 출국금지 및 감치제도 등의 강제수단이 부재한 실정임²⁾. 이로 인하여 2024년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은 같은 기간 지방세 징수율 95.7%에 비해 10.4%p 낮은 85.3% 수준을 보이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에 대해서 국세·지방세의 경우와 같이 출국금지 및 감치제도의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세·지방세의 체납은 국민의 기본 의무(납세의 의무)의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은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부과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체납을 납세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가

2)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일시적인 사업 실패로 부과금을 맞은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조세 체납자와 똑같이 신체의 자유(감치)나 거주이전의 자유(출국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만약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뿐만 아니라 나목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도 포함되어 있는데, 나목은 제재금 성격이 아닌 일반채권(사용료)으로서, 이에 대한 미납에 대해서까지 이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채권유형]

구 분		내 용	예 시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른 법에서 동법에 따라 징수토록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과징금, 개발부담금 건축법이행강제금, 공유재산변상금 등
	나목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토록 한 금전	지적재조사조정금 항만사용료 등

문 의 처
02)6788-5333